

공운법 제3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의2 주요내용

< 감사 후보자 추천 기준 >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임명 예정인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